|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범시행)》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52호  크로스보더(跨境) 과세대상서비스에 대한 세수관리를 규범화할 목적으로, 현행 증치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9월 13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크로스보더 과세대상**  **서비스 증치세 면세 관리방법(시범시행)**  **제1조** 경내의 단위와 개인(이하 ‘납세인’)이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이하 ‘크로스보더서비스’)에 대해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아래의 크로스보더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1) 공정, 광산자원이 경외에 있는 공정탐사서비스  (2) 회의전시장소가 경외인 컨벤션서비스  고객이 경외 회의나 전시에 참석하기 위해 제공하는 조직안배(安排)서비스는 회의전시장소가 경외인 컨벤션서비스에 속함.  (3) 보관장소가 경외인 창고보관서비스  (4) 대상물을 경외에서 사용하는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5)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배급과 방영서비스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배급서비스는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을 배급하거나 스포츠경기 등 문화스포츠활동 보도권 또는 방영권을 양도하여, 해당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과 스포츠경기 등 문화스포츠활동이 경외에서 방영 또는 보도되는 것을 가리킨다.  경외에서 제공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방영서비스는 경외의 영화관, 극장, DVD방 및 기타 장소에서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을 방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내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위성통신, 인터넷, 케이블TV 등 무선 또는 유선장치를 통해 경외에 방영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은 경외에서 제공하는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방영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수로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국제선박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도로운송 경영허가증》 또는 《국제자동차운송 주행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도로운송 경영허가증》 경영범위에 ‘국제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항공운송 방식으로 수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공공항공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영범위에 ‘국제항공여객/화물/우편물운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7) 육로운송 방식으로 홍콩과 마카오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도로운송증》을 보유한 홍콩/마카오 직행 운송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로운송 방식으로 대만으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중국-대만간 수로운송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중국-대만간 선박운영증》을 보유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로운송 방식으로 홍콩/마카오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홍콩/마카오 노선 운영허가를 득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운송 방식으로 홍콩/마카오/대만으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콩/마카오/대만에서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공공항공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경영범위에 ‘국제/국내(홍콩 포함) 항공여객/화물/우편물 운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8) 간이계세방법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서비스:  1) 국제운송서비스  2) 홍콩/마카오/대만 왕복 교통운송서비스 및 홍콩/마카오/대만에서 제공하는 교통운송서비스.  3)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R&D서비스와 설계서비스, 단 경내 부동산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 제외  (9)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  1) R&D서비스와 기술서비스(R&D서비스와 공정탐사서비스 제외),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아이디어서비스(설계서비스와 광고서비스, 컨벤션서비스 제외), 물류보조서비스(창고보관서비스 제외), 검증자문서비스, 방송영화 프로그램(작품) 제작서비스, 원양운송 기간용선서비스, 원양운송 항해용선서비스, 항공운송 전세서비스  경외의 단위가 국제운송 및 홍콩/마카오/대만 운송업무를 취급하고 중국 공항, 부두, 역전, 영공, 내륙하천, 해역을 경유할 경우, 납세인이 상술한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항공지상서비스, 항구부두서비스, 화물여객터미널 서비스, 인양구조 서비스, 하역운반서비스는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물류보조서비스에 포함된다.  계약대상물의 경내 에너지관리계약서비스, 경내 부동산에 제공한 검증자문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시 화물실체가 경내의 검증자문서비스인 경우, 본 관에서 규정한 경외의 단위에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광고투입지가 경외인 광고서비스.  광고투입지가 경외인 광고서비스란, 경외에서 발표한 광고에 제공한 광고서비스를 가리킨다.  **제3조** 납세인이 중국 해관특수감독구역 내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과세대상서비스가 크로스보더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4조** 납세인이 본 방법 제2조에서 명시한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이용자와 크로스보더서비스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제5조** 납세인이 경외의 단위에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전체 수입액은 경외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제6조** 납세인이 제공하는 크로스보더서비스의 증치세를 면제할 경우, 크로스보더서비스 판매액을 단독결산하고, 공제불가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며, 면세수입에 대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7조** 납세인이 제공하는 크로스보더서비스에 대한 면세를 신청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진행하하며, 아래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면세등록표》(첨부 참조)  (2) 크로스보더서비스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3) 본 방법 제2조 제(1)항에서 제(5)항 및 제(9)항의 제2목의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장소가 경외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본 방법 제2조 제(6)항과 제(7)항 및 제(8)항 제1목과 제2목의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국제운송업무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운송업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경외의 단위에게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이용자 기구소재지가 경외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크로스보더서비스계약서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고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경외 자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복사본만 제출하고, ‘복사본과 원본 일치’라는 문구를 기재하며, 법정대표인(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할 수 있다. 경외 자료 원본이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고 법정대표인(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단위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제출된 경외 증빙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인에게 경외 공증부문이 발급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납세인이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처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아래 상황에 근거하여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제출한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즉시 납세인에게 고지하여 보정해야 한다.  (2)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고 규정된 형식에 부합되거나, 납세인이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제출자료를 보정한 경우, 납세인의 등록을 수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은 납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제출자료 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정한 제출자료가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납세인의 금회(本次)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등록을 수리하지 않으며 모든 제출자료를 납세인에게 반환한다.  **제9조** 납세인이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증치세를 일률적으로 면제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기존에 체결한 크로스보더서비스계약이 변경되거나 크로스보더서비스 유관 상황이 변경되고, 변경 후에도 여전히 본 방법 제2조에 규정한 면세 크로스보더서비스 범위에 속할 경우,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새로 밟아야 한다.  **제11조** 납세인은 본 방법 제7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완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납세인의 크로스보더서비스 증치세 납세상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존재할 경우,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집행한다. 종전에, 납세인이 본 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크로스보더서비스를 제공하고, 면세신고를 처리한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보충처리하며, 면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크로스보더서비스 등록수속을 처리한 후,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이후 납부할세액을 공제 할 수 있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기 발급한 경우, 전체 페이지를 회수한 후, 크로스보더서비스 면세 등록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종전에, 납세인이 제공한 크로스보더서비스가 본 방법 제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첨부: 크로스보더 과세대상서비스 면세등록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79541.files/n12379569.doc> |  |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服务**  **增值税免税管理办法（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52号  　　为规范跨境应税服务的税收管理，根据增值税现行有关规定，国家税务总局制定了《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服务增值税免税管理办法（试行）》，现予以发布。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3年9月13日  **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服务增值税**  **免税管理办法（试行）**  **第一条** 境内的单位和个人（以下称纳税人）提供跨境应税服务（以下称跨境服务），适用本办法。  **第二条** 下列跨境服务免征增值税：  　　（一）工程、矿产资源在境外的工程勘察勘探服务。  　　（二）会议展览地点在境外的会议展览服务。  　　为客户参加在境外举办的会议、展览而提供的组织安排服务，属于会议展览地点在境外的会议展览服务。  　　（三）存储地点在境外的仓储服务。  　　（四）标的物在境外使用的有形动产租赁服务。  　　（五）在境外提供的广播影视节目（作品）发行、播映服务。  　　在境外提供的广播影视节目（作品）发行服务，是指向境外单位或者个人发行广播影视节目（作品）、转让体育赛事等文体活动的报道权或者播映权，且该广播影视节目（作品）、体育赛事等文体活动在境外播映或者报道。  　　在境外提供的广播影视节目（作品）播映服务，是指在境外的影院、剧院、录像厅及其他场所播映广播影视节目（作品）。  　　通过境内的电台、电视台、卫星通信、互联网、有线电视等无线或者有线装置向境外播映广播影视节目（作品），不属于在境外提供的广播影视节目（作品）播映服务。  　　（六）以水路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但未取得《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的；以陆路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但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或者《国际汽车运输行车许可证》，或者《道路运输经营许可证》的经营范围未包括“国际运输”的；以航空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但未取得《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或者其经营范围未包括“国际航空客货邮运输业务”的。  　　（七）以陆路运输方式提供至香港、澳门的交通运输服务，但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或者未具有持《道路运输证》的直通港澳运输车辆的；以水路运输方式提供至台湾的交通运输服务，但未取得《台湾海峡两岸间水路运输许可证》，或者未具有持《台湾海峡两岸间船舶营运证》的船舶的；以水路运输方式提供至香港、澳门的交通运输服务，但未具有获得港澳线路运营许可的船舶的；以航空运输方式提供往返香港、澳门、台湾的交通运输服务或者在香港、澳门、台湾提供交通运输服务，但未取得《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或者其经营范围未包括“国际、国内（含港澳）航空客货邮运输业务”的。  　　（八）适用简易计税方法的下列应税服务：  　　1．国际运输服务；  　　2．往返香港、澳门、台湾的交通运输服务以及在香港、澳门、台湾提供的交通运输服务；  　　3．向境外单位提供的研发服务和设计服务，对境内不动产提供的设计服务除外。  　　（九）向境外单位提供的下列应税服务：  　　1．研发和技术服务（研发服务和工程勘察勘探服务除外）、信息技术服务、文化创意服务（设计服务、广告服务和会议展览服务除外）、物流辅助服务（仓储服务除外）、鉴证咨询服务、广播影视节目（作品）的制作服务、远洋运输期租服务、远洋运输程租服务、航空运输湿租服务。  　　境外单位从事国际运输和港澳台运输业务经停我国机场、码头、车站、领空、内河、海域时，纳税人向上述境外单位提供的航空地面服务、港口码头服务、货运客运站场服务、打捞救助服务、装卸搬运服务，属于向境外单位提供的物流辅助服务。  　　合同标的物在境内的合同能源管理服务，对境内不动产提供的鉴证咨询服务，以及提供服务时货物实体在境内的鉴证咨询服务，不属于本款规定的向境外单位提供的应税服务。  　　2.广告投放地在境外的广告服务。  　　广告投放地在境外的广告服务，是指为在境外发布的广告所提供的广告服务。  **第三条** 纳税人向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内的单位或者个人提供的应税服务，不属于跨境服务，应照章征收增值税。  **第四条** 纳税人提供本办法第二条所列跨境服务，必须与服务接受方签订跨境服务书面合同。否则，不予免征增值税。  **第五条** 纳税人向境外单位有偿提供跨境服务，该服务的全部收入应从境外取得。否则，不予免征增值税。  **第六条** 纳税人提供跨境服务免征增值税的，应单独核算跨境服务的销售额，准确计算不得抵扣的进项税额，其免税收入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第七条** 纳税人提供跨境服务申请免税的，应到主管税务机关办理跨境服务免税备案手续，同时提交以下资料：  　　（一）《跨境应税服务免税备案表》（见附件）；  　　（二）跨境服务合同原件及复印件；  　　（三）提供本办法第二条第（一）项至第（五）项以及第（九）项第2目跨境服务，应提交服务地点在境外的证明材料原件及复印件；  　　（四）提供本办法第二条第（六）项、（七）项以及第（八）项第1目、第2目跨境服务的，应提交实际发生国际运输业务或者港澳台运输业务的证明材料；  　　（五）向境外单位提供跨境服务，应提交服务接受方机构所在地在境外的证明材料；  　　（六）税务机关要求的其他资料。  　　跨境服务合同原件为外文的，应提供中文翻译件并由法定代表人（负责人）签字或者单位盖章。  　　境外资料无法提供原件的，可只提供复印件，注明“复印件与原件一致”字样，并由法定代表人（负责人）签字或者单位盖章；境外资料原件为外文的，应提供中文翻译件并由法定代表人（负责人）签字或者单位盖章。  　　主管税务机关对提交的境外证明材料有疑议的，可以要求纳税人提供境外公证部门出具的证明材料。  **第八条** 纳税人办理跨境服务免税备案手续时，主管税务机关应当根据以下情况分别做出处理：  （一）报送的材料不符合规定的，应当及时告知纳税人补正；  （二）报送的材料齐全、符合规定形式的，或者纳税人按照税务机关的要求补正报送全部材料的，应当受理纳税人的备案，将有关资料原件退还纳税人。  　　（三）报送的材料或者按照税务机关的要求补正报送的材料不符合本办法第七条规定的，应当对纳税人的本次跨境服务免税备案不予受理，并将所有报送材料退还纳税人。  **第九条** 纳税人提供跨境服务，未按规定办理跨境服务免税备案手续的，一律不得免征增值税。  **第十条** 原签订的跨境服务合同发生变更或者跨境服务的有关情况发生变化，变化后仍属于本办法第二条规定的免税跨境服务范围的，纳税人应向主管税务机关重新办理跨境服务免税备案手续。  **第十一条** 纳税人应当完整保存本办法第七条要求的各项资料。  **第十二条** 税务机关应当定期或者不定期对纳税人的跨境服务增值税纳税情况进行检查，发现问题的，按照现行有关规定处理。  **第十三条** 本办法自2013年8月1日起执行。此前，纳税人提供符合本办法第二条规定的跨境服务，已进行免税申报的，按照本办法规定补办备案手续；未进行免税申报的，按照本办法规定办理跨境服务备案手续后，可以申请退税或者抵减以后的应纳税额；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将全部联次追回后方可办理跨境服务免税备案手续。此前，纳税人提供的跨境服务不符合本办法第二条规定的，应照章征收增值税。  附件：跨境应税服务免税备案表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79541.files/n12379569.doc> |